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58호 2019. 8. 12(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4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810-11번지 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김형진 외 5명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1
 - 나. 대지면적 : 8,423.2㎡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6,749.85㎡ (지하1층, 지상4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7개동, 120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68,736,576천원
4. 사업기간 : 2019. 08. 12. ~ 2020. 02. 28.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디에스네트웍스(주) (대표자 김영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3, 대승빌딩 8층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 나. 대지면적 : 52,663.36㎡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359,211.9491㎡ (지하4층, 지상47층)
 - 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1,789세대, 오피스텔 1개동 529호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 979,657.37천원
4. 사업기간 : 2019. 09. 01. ~ 2023. 01. 3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4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동2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동2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대표자 이재국)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8-25, 7층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동2블록
 - 나. 대지면적 : 41.802m²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03,918.1308m² (지하4층, 지상4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4개동 1,128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523,401,310.002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30. ~ 2022. 10. 3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9 - 13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취지(개정이유)

- 현행 영유아보육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개정에 따른 미정비 조항 개정
-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 정비

2. 주요내용

- 구립어린이집의 용어변경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횟수 정비(제6조제5항)
- 보육교사 임면보고 기한 정비(제9조제2항)
-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제13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가정보육과, 전화 032-560-5727, 팩스032-560-2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지침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육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지침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립어린이집’ 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명시한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변경하여 법령과 조례 간 용어 일치하고자 함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자가 1명인 경우, 세 차례 재공고 하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신속한 행정처리에 저해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한 차례 재공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 조례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면보고 기한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지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구립어린이집” 을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구립어린이집” 을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립어린이집” 을 각각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구립어린이집” 을 각각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같은 항 중 “재공고를 실시하되, 두 차례 연장하여 총 세 차례까지만 한다” 를 “1회에 한해 재공고한다” 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구립어린이집” 을 각각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구립어린이집” 을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립어린이집” 을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를 “수탁자는 제1항제1호” 로, “임면결과를 원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를 “임면보고를 규칙 제11호제1항에 따라 실시” 로 한다.

제10조 중 “구립어린이집” 을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립어린이집” 을 각각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3년” 을 “5년” 으로 한다.

조례 제15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립어린이집” 을 각각 “국립어린이집”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재
위탁 세부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
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생략)
- 2. 시설의 재건축 등 구립어린이집
의 휴·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 3. (생략)

제8조(위탁자의 의무) 위탁자(인천광
역시 서구)는 아래의 각 호의 내용
을 위탁계약에 포함되도록 수탁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구립어린이집 운영관련 관계 법
령,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그 밖
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2. ~ 9. (생략)

제9조(교직원 임면) ① 구립어린이집
의 원장 및 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면
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략)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
면결과를 원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

-----.
② ----- 국립어린이집 -

-----.

③ -----

-----.

- 1. (현행과 같음)
- 2. ----- 국립어린이
집-----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자의 의무) -----

-----.

- 1. 국립어린이집 -----

- 2. ~ 9. (현행과 같음)

제9조(교직원 임면) ① 국립어린이
집-----
-----.

- 1.·2. (현행과 같음)
- 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 ----- 임면
보고를 규칙 제11호제1항에 따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규칙 제2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조례 제15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부칙

제2조(적용례)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위탁하는 구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하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

실시-----.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의 취소) -----
----- 국립어린이집-----
-----.

제11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
----- 국립어린이
집 -----

-----.

② ----- 국립어린이집 -----
-----.

제13조(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5년-----

-----.

조례 제15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부칙

제2조(적용례) ① -----

----- 국립어린이집-----

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략)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구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국립어린이집-----
이집-----.

1. ~ 3. (현행과 같음)

② ----- 국립어린이집 -----

-----.

관계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대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 8. 17.>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 「2019 보육사업안내」 P.453

다. 업무위탁(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3)

- 업무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운영위탁기관 대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 그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업무위탁시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기타 수탁내용 및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을 자체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기관 선정 심사 시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 관계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함
- 업무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재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업무실적 등 평가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결과 활용 가능
- 신청서류(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
-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별도의 센터 운영관련 약정서를 체결
- 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 직원 임면
 -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
 -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위탁의 취소
 -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수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등